

소

장

<신미주>

원 고 김 수 영 외 37

피 고 풍성주택주식회사

손 해 배 상 (기) 청 구 의 소

소송물가액 금 152,000,000원정

첨용인지액 금 760,000원정

송 달 료 금 35,200원정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별지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의 6 법전빌딩 210호

담당 변호사 윤 영 근, 김 철 준, 김 동 균, 신 장 수

피 고 풍성주택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32

대표이사 고 담 일

손 해 배 상 (기) 청 구 의 소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풍성주택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합니다.)는 수원시 금곡동 262의 10 소재 대지상에 신미주 아파트(총 4개동 646세대)를 건설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 건설회사이며, 원고들은 1992. 5경 위 피고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별지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소지(위 신미주 아파트중 1동 9호라인과 10호라인)에 각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위 부동산 대지상에 건축한 아파트중 31평형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4. 2. 28.경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1994. 4. 26.경까지 원고들은 모두 입주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나서 보니 위 아파트 1동의 건물형태가 별지도면과 같이 기역자('7') 모양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다가 건물의 후면이 아닌 전면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지어져 있어서 현재 위 1동에 사는 주민들 특히 4호, 5호, 9호, 10호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안방이나 거실에서 상대방의 안방이나 거실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서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9호라인에서 5호라인 사이의 최단거리가 불과 11.10미터, 그리고 10호라인과 4호라인 사이의 최장거리가 24미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상시 아파트거실에서 맞은편의 거실내부를 훤히 들여다 보이고 특히 야간에는 집안에 불을 밝혀 놓게 되면 낮시간보다 더 잘 들여다 보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노출이 심한 여름철에 원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별지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1호라인에서 6호라인까지의 전면을 7호라인처럼 동쪽으로 향하게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면 본 사건과 같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 그동안 원고들이 수차에 걸쳐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와같은 불편을 토론하며 아파트 전면 유리를 내부가 투시되지 않는 유리로 교체해 달라는 등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회사측은 원고들에게 앞베란다에 대하여 칸막이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만 하였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회사측이 위 아파트 1동 4호, 5호라인의 각 주민들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사실에 대하여 8호, 9호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이를 숨기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위 4호, 5호 라인 주민들은 각자 거실 전면 부분에 브라인드를 설치하고 살면서 피고회사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건축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사생

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수인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은 그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회사는 불법행위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우선 원고들의 안방과 거실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위 아파트 전면부분의 유리를 내부가 투시되지 않는 유리(이른바 매직밀러)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각 금 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위 금액은 추후에 확정하겠습니다.)

나. 또한,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생활을 침해받음으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갑제 1호증의 1 내지 38 각 공급 계약서
 갑제 2호증의 1 내지 38 각 주민등록등본
 갑제 3호증의 1 내지 7 각 사진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1995. 2.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산
 담당 변호사 윤 영 근
 담당 변호사 김 철 준
 담당 변호사 김 동 균
 담당 변호사 신 장 수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 지(원고들의 표시)

원 고 1.	김	스	여	
2.	정	기	종	
		위와	같은	아파트 호
3.	강	성	문	
		위와	같은	아파트 호
4.	김	광	수	
		위와	같은	아파트 호
5.	황	선	우	
		위와	같은	아파트 호
6.	김	대	연	
		위와	같은	아파트 호
7.	이	건	중	
		위와	같은	아파트 호
8.	장	창	수	
		위와	같은	아파트
9.	유	재	근	
		위와	같은	아파트
10.	남	정	희	
		위와	같은	아파트
11.	송	주	은	
		위와	같은	아파트
12.	김	순	애	
		위와	같은	아파트
13.	한	광	희	
		위와	같은	아파트
14.	유	경	열	
		위와	같은	아파트
15.	이	문	현	
		위와	같은	아파트
16.	김	재	영	
		위와	같은	아파트
17.	정	한	용	
		위와	같은	아파트
18.	정	우	영	
		위와	같은	아파트
19.	최	성	호	
		위와	같은	아파트
20.	장	중	권	
		위와	같은	아파트
21.	박	수	목	
		위와	같은	아파트
22.	이	부	용	
		위와	같은	아파트
23.	김	형	중	
		위와	같은	아파트
24.	이	중	도	
		위와	같은	아파트
25.	전	효	식	

- | | |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26. 김 | 재 현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27. 이 | 삼 용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28. 윤 | 신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29. 한 | 진 희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0. 권 | 용 군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1. 현 | 종 철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2. 안 | 병 선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3. 신 | 연 심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4. 송 | 태 명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5. 박 | 상 범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6. 박 | 대 권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7. 엄 | 인 회 |
| | 위와 같은 아파트 |
| 38. 주 | 형 열 |
| | 위와 같은 아파트 |